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19-12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9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 주민부담 사항을 행정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부설주차장 운영 및 시간(안 제2조~제3조)
- 다.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대상, 징수 및 방법(안 제4조~제6조)
- 라. 자동차 훼손, 도난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(안 제7조)
- 마. 지도·점검(안 제8조)
- 바. 시행규칙(안 제9조)

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주차장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8. 8. ~ 2019. 8. 28. (제출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주차장 운영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주차장 관리·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3조(주차장 운영시간)** 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며, 그 외의 시간 및 토요일,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,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 징수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주차요금 징수대상)**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.

**제5조(주차요금)**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,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한다. 다만,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주차요금 징수방법)** 주차요금은 차량번호인식기(차량 출입시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가 촬영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말한다)에 따른 차량 출입 시간을 계산하여 신용카드·현금 등으로 징수한다.

**제7조(손해배상 책임)** 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**제8조(지도·점검)**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당시 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제정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총무과 전민재 (☎8206)